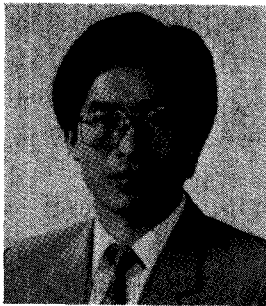


중국특허청의 최근동향과 특허 경쟁력 분석(完)



金元俊
〈특허청 통신과장〉

목 차

1. 서론
2. 중국특허청의 동향
3.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4. 자료 및 전산화
5. 특허권의 보호정책
6. 92년 9월 개정 특허법의 주요내용
7. 국제협력
8.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특허경쟁력 분석
9. 결론

〈고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6. 92년 9월 개정 특허법의 주요내용

1992. 9. 4 중국 제7기 전인민대회에서 채택된 개정 특허법은 1933. 1. 1부터 발효되었다. 이 개정법의 내용과 방향은 특허법 Harmonization을 염두에 둔 국제화 및 개방화에 있으며 상당히 많은 부분이 EPO와 독일법에 가깝게 개정되었다.

1) 물질특허도입(법 제25조)

불특허 사유로 규정했던 식품, 음료품 및 조미료와 약품 및 화학적 공법으로 획득된 물질을 삭제하고 물질특허를 도입하였다.

2) 국내 우선주장제도 도입(법 제30조)

중국에서 최초로 출원된 발명 또는 실용실험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국내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3) 조기공개제도(법 제34조)

이 제도는 EPO DGI에서 하는 공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출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빨리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용과 의장의 특허출원은 조기 공개하지 않고 방식 심사만 통과하면 곧 바로 공고하고 있다.

4) 이의 신청제도 개선(법 제41조)

종래법에서는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여 독일이나 EPO처럼 등록후 취소청구 제도로 변경시켰다. 즉 누구든지 등록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명, 실용신안, 의장특허출원에 대하여서 특허권 취소청구할 수 있다. 이 취소청구 제도는 독일의 제도와 동일하며 이 취소청구 기간이 지나면 권리부실위원회에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EPO 및 독일과 똑같은 것이며 일본도 1994년부터 이 제도

를 시행할 예정이다.

5)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법 제45조)

개정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Harmonization법에 맞게 수정하였다. 발명 특허의 권리 존속기간은 구법에서 출원한 날부터 15년간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20년간으로 실용신안과 의장은 종래 출원날부터 5년간을 개정법에서는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우선권을 주장하여 등록된 특허권은 중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6) 출원보정의 엄격화(법 제33조)

중국은 EPO나 일본의 개정법(1994년 시행 예정)처럼 출원보정의 범위를 최초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개정하였다.

7) 강제 실시권제도보완(법 제51조 및 제52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가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적당한 조건으로 특허 이용에 관한 허락을 요청하였으나, 일정기간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허청은 신청에 의해서 특허발명, 실용신안에 대해서 강제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강제실시권을 허락하게 하였는데 이점은 우리의 법과 거의 유사하다.

8) 특허권의 보호(법 제60조 및 제63조)

권리침해사건이 발생시 발명특허가 새로운 제품의 제조방법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은 그 제조에 사용되는 방법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특허되지 않은 물품을 특허된 물품으로 특허되지 아니한 제조방법을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표시한 자에게 특허관리기관이 그러한 행위의 중지, 공개적인 시정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국제협력

중국 특허청은 WIPO, UNDP 및 EPO 등으로부터 기술 및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왔다. 특히 중국 특허청장인 Dr. Gaolulin이 1991년 9월에는 파리조약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최근에 중국이 주요 국가들과 맺은 쌍무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과 독일의 특허협력 : 1985년 이후 독일로부터 특허제도 및 심사관련 기술이전 및 CPO-GTE 이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양국간에 "Memorandum On the Plan Of 1992 Sino-Germany Patent Corporation"를 서명하였다.

2) 중국과 일본의 특허협력 :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M220D 컴퓨터 System에 대한 특허정보 써치시스템을 기술이전 받았고, 중국 특허청의 주전산기의 CPU 용량을 4MB에서 8MB로 확장하고 필요한 Software를 새로 입력하였다. 1991년 4월에는 "중국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에 관한 교육시스템 개발"에 관해서 양국이 서명한 후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 중국과 소련의 특허협력 : 1991. 3 소련 발명위원회 부의장 Mr. Blinnikov가 중국 특허청을 방문한 후 양국간에 과학기술의 협력 및 발명과 특허업무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4) 중국과 오스트리아 특허협력 : 1991. 10 오스트리아 특허청장 Mr. Rafenier가 중국을 방문 양국간에 1992년 특허관련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5) 중국과 한국의 특허협력 : 1992. 10 한 국 특허청장이 중국을 방문 “한·중 특허협 정”을 조인한 바 있고 금년 10월에는 중국 특허청장인 Dr. Gao Lulin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8.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특허경쟁력 분석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의 중국 경제 규모(구매력 기준)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라고 발표한바 있으며, 주요 국제 연구기관들도 21세기초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짐 치고 있다.

미국의 레스퍼 더로우 교수도 최근 「세계 무역전쟁(Head to Head)」라는 저서에서 “세계 질서의 중심은 냉전체제가 끝나고 군사 적 대결에서 경제적인 전쟁으로 바뀌면서 세계 경제가 유럽경제권, 북미경제권 및 동아시아 경제권으로 3분될 것이며, 이 3개의 경제 권이 격렬한 경제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지 적한 바 있다.

오늘날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쟁 내지 기술전쟁 시대이고, 더 나아가서는 특허전쟁시대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북아시아 5개국(한국, 북한, 중국, 대만 및 일본)의 경제 및 특허 경쟁력을 아래 <표 7> 와 같이 분석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국민 개개 인은 가난해 보이지만 국가는 부유하며 지난 해 세계 무역량에서 우리나라를 제치고 11위 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 특허청의 심사관수는 우리나라 보다 3 배가 더 많은 반면에 업무 처리량은 우리의 절반이하임을 볼때 특허 경쟁력이 우리보다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즉, 중국심사관들은 특허청이 창설되면서 모두 일정 수준의 언어 교육과 해외 훈련을 받은 후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Man power가 높고 사회주의 체제하 에 있는 조직이므로 인사문제와 같은 내면적 갈등은 적을 수밖에 없다.

대만 특허청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도 우 리나라와 비슷하고 전산화가 이미 완성되어서 (주전산기 : IBM 3090, IBM 4381를 이용해 서 전리국과 상표국에서 단말기를 이용) 업무 환경이 현대화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은 미국, EPO와 3국 협력 체 제를 유지하고, 인력 및 장비면에서 동아시아 국가중에서 선두 주자이다. '94년부터 시행 예정인 실용신안의 무심사제도 도입으로 심사 기간의 단축과 Paperless 계획의 실현으로 심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며 특허 경 쟁력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허 제도는 구러시아의 제도를 답습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인 Harmon-

<표 7> 동북아시아 5개국의 경제 및 특허경쟁력 비교(1993. 한국은행 통계)

1. 경제적인 측면

(1992년 기준, *은 199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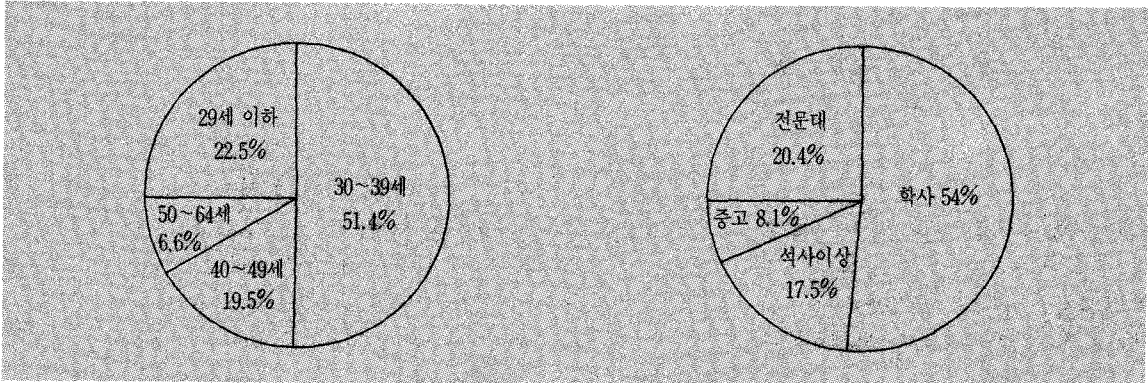
내용 \ 국가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인구(백만명)	44	22	1,171	21	124
GNP(억 US\$)	2,945	211	4,200	1,803	33,818
1인당 GNP(\$)	6,693	959	359	8,856	27,273
수출액(억 US\$)	706	* 14	850	815	3,397
수입액(억 US\$)	818	* 23	806	720	2,320
무역수지(억 US\$)	-52	* -9	44	95	1,077

2. 특허분야

(1992년 기준)

내용 \ 국가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직원 수	575	120	1,300	559	2,374
심사관 (특실)	153	60	450	150	955
심판관 (향고포함)	19	5	400 (인민법원)	30	292
특허출원	36,154	4,549	11,423	10,325	380,453
외국인출원	14,879	4,549	4,051	8,983	44,357
외국인출원 비율(%)	53	100	35	87	12
특허등록	8,691	37	4,122	10,123	36,100
외국인등록	6,138	37	2,811	9,414	5,647
외국인등록 비율(%)	71	100	68	93	16

〈표 8〉 대만 특허청 직원의 연령 및 학력분포



ization)법으로 제도를 수정하기에는 상당한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9〉은 북한의 특허청 조직표이고 발명심사국은 1980. 7. 26자로 발명위원회내에 설치된 조직의 실질적으로 특허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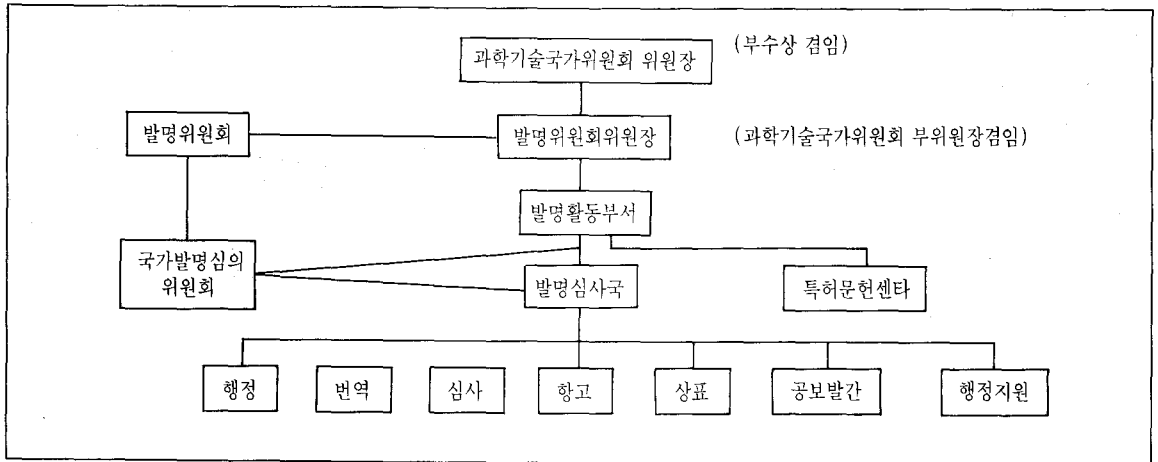
다음 〈표 10〉은 남북한의 공업소유권의 출원 및 등록현황을 비교해 본 것으로 북한의 출원 및 등록은 우리보다 1/3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은 구 소련의 특허제도인 발명자증 제도를 두고 있고 특허

권을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아래표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는 모두 외국인 것에 해당되고 국내인은 주로 발명자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9. 결론

현대는 정보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는 이미 경제 전쟁시대 내지 특허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21세기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중국 특허청의 최근 동향과 주변 국가들의

〈표 9〉 북한의 특허청 조직



〈표 10〉 남북한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WIPO 1991)

구 분	한 국		북 한	
	출원	등록	출원	등록
특 허 의 장	36,154	8,691	4,549	37
상표(서비스 마크 포함)	20,097	13,723	9,964	2,621
계	52,600	25,928	21,587	8,808
계	108,851	48,342	36,100	11,466

특허 경쟁력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개방과 개혁” 정책이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특허청이 단시일 내에 현대화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필자의 소견으로는 중국 지도층이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고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싹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발명으로 결실을 맺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개방과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는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산업재산권 권리를 확실히 보호해 주는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특허청의 역할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중국은 금년안에 PCT 조약에 가입한 후 PCT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조사기관이 되

고 특허법을 새롭게 개정함으로써 국제적 무대에서 특허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허 중국 특허청이 자료의 현대화 및 전산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심사관 및 변리사의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함에 따라 WIPO 등 선진국의 특허 전문가들이 중국 특허청의 심사 및 심판의 관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12억의 인구에 비해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부족한 편이고, 심사관의 교육과 써치화일의 정리, 서구화된 특허제도의 발전과 국제협력 등에 여러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놓여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중국 특허청 지도자들은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심사·심판 관련 특허제도 운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심사관의 양성, 특허권 보호 및 전국적인 전산망 구축에 대한 장기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중국 특허청의 최근 동향을 종합해 볼 때 그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21세기에 중국이 세

계 경제를 뒤흔들게 될 것이 확실하다. 한편으로는 한국, 일본 및 중국으로 이어지는 '3각 경제 골든 벨트'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새한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함께 우리 특허청도 개혁과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주변국가들과 경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7년간의 황금기를 알차게 가꾼다면 한국 특허청에 Vision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월간지적재산」, p. 56~59, 1993. 6.
- 2) 대한변리사회, 특허와 상표 제306, 307, 308, 316, 327~329호.
- 3) 중국특허청, Annual Report, 1989~1991.
- 4) 중국상표청, Annual Report, 1989~1990.
- 5) 대만특허청, 진리상표년보, 1990~1992.
- 6) 일본특허청, 특허년보, 1992. 6.
- 7) 대광서림, You me 특허사무소 번역, 「특허법개설」, p. 33~50.
- 8) 일본특허청, Imagination and Creation, 1992.
- 9) 한국일보, 1993. 6. 9. 「한-중-일, 3각 골든벨트 이룬다」 특집기사. <♣>

영업비밀 상담 및 교육 안내

특허청 조사과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영업비밀 관리상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개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의 범위, 영업비밀의 관리방법 등에 관해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귀사(귀하)의 요청이 있으면 특허청 조사과의 영업비밀 전문 강사가 귀사(귀하)를 방문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 드립니다.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자료나 안내서를 비치하여 요청이 있으면 제공해 드립니다.

영업비밀 보호 상담센터

전화 568-0121 (직통) FAX : 553-9584
568-8150 (273, 274)